

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

의안 번호	2011 ~
----------	--------

제출연월일	2011. 6. .
발 의 자	이성복의원외2인

1. 제정이유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함(안 제1조, 제2조).
- 나. 조례의 지원대상을 정함(안 제3조).
- 다.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범위와 경로당의 이용인원, 시설규모 등을 고려한 차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.
- 라.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.
- 마.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·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).
- 바.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수익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.
- 사. 지원금의 반환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.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 -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, 제31조, 제36조, 제37조, 제47조
 -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
- 나. 예산조치 : 2011년도 2,943,018천원 예산확보
- 다. 집행부 의견수렴 : 2011. 06 중
- 라. 그 밖에
 - 1)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사항 없음
 - 2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 - 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경로당 지원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경로당”이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 제25조에 따라 설치신고한 경로당으로 한정한다.

제4조(지원범위) 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(이하 “지원금”이라 한다)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로당 시설 운영비
2. 경로당 시설 난방연료비
3.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
4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
5. 노인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·유지관리비
6.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경로당의 이용인원, 시설규모,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계획 수립)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그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제6조(프로그램 개발 등) 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·지원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수익활동 지원) 군수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8조(지원금의 반환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.

1.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
2.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
3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 법령

□ 「노인복지법」

[시행 2011. 3.30] [법률 제10509호, 2011. 3.30, 일부개정]

보건복지부(노인정책과), 02-2023-8525

제4조(보건복지증진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,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1조(노인복지시설의 종류)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. <개정 2004.1.29>

1.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노인의료복지시설
3. 노인여가복지시설
4.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노인보호전문기관

제36조(노인여가복지시설)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<개정 2007.8.3>

1. 노인복지관 : 노인의 교양·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,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·재가복지,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2. 경로당 :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·취미활동·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3. 노인교실 :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·노인건강유지·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

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4. 노인휴양소 :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·여가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

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2.29, 2010.1.18>

제37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,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1999.2.8, 2008.2.29, 2010.1.18>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노인복지법 시행규칙」

[시행 2011. 4.15] [보건복지부령 제51호, 2011. 4.15, 타법개정]

제25조(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등) 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서(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)에 다음 각호의 서류(전자문서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02.12.20, 2005.6.8, 2005.10.17, 2006.7.3, 2008.1.28, 2010.9.1>

1.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1부
2. 위치도·평면도 및 설비구조내역서 각 1부(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다)
3. 이용료 기타 이용자의 비용부담 관계서류 1부(경로당을 제외한다)
4. 사업계획서 1부
5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경로당 및 노인교실의 경우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으며,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

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) 각 1부

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·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. <신설 2006.7.3, 2008.1.28, 2010.2.24, 2010.9.1>

③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노인여가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1999.8.25, 2006.7.3, 2008.1.28>